

대전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나1150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래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5. 23.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1274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A과 피고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물상보증인 C 및 H이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